

◆ 동작구공고 제2021-612호

364 - 190

()

1.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4월 1일

동 작 구 청 장

가. 열람기간 : 2021. 4. 2. ~ 2021. 4.15.(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)

나.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: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3층)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	-	증) 31,775	31,775	-

2)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)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

마. 기타사항
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☎ 02-820-966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